

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(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) 제3항, 보험업법시행령 제 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-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.

##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보험업법 제111조제3항과 제4항에 관련된 사항

1. 대주주명		(주) 동부하이텍
2. 신용공여내용	신용공여일	- (최초공여일 2004년 6월 10일)
	신용공여종류	신용대출금
	신용공여금액(원)	- (최초공여액 65,000,000,000)
	신용공여총잔액(원)	38,151,000,000
	만기일	2017년 12월 10일
	신용공여금리(%)	- 2013. 6월 이전 : 기본금리(A0 3yr)* - 2013. 6월 이후 : 기본금리+ 9.535% * 기본금리 : 민간채권평가 3사(나이스채권평가, 한국자산평가, KIS채권평가)의 평균 채권금리로, 한국기업평가원의 기업 신용등급 (동부하이텍 A0)별 금리
3. 자금용도		Syndicated Loan참여를 통한 자금운용수익률 제고(본건은 기존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의 변경공시임)
4. 이사회결의일		2012년 12월 26일
5. 기타		- 본 건은 주요내용의 변경공시로서, 2004년 4월 9일에 기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동부하이텍이 신디케이티드론 주간사인 산업은행을 통해 <b>대출조건 변경을 요청함</b> 에 따라, 당사는 대주단의 일원(약5.8%)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의함  [결의결과] - 아래 의안에 대하여 동의 처리함  [부의내용] 동부하이텍 신디케이티드론 운영 등 주요사항 변경의 건 - 제1호 의안 : 재무약정 일부(EBITDA/총이자비용) 면책 ○ 신디론 계약서 제12조 제7항 재무약정 및 실적

구분	'12년	
	약정	실적(예상)
부채비율	350%이하	344%
EBITDA/ 총이자비용	2.5 이상	2.05

- 제2호 의안 : 동부메탈 지분 및 울산 유화공장 부지 매각 기한연장

○ 대출계약서 제12조 15항(자구이행) 자.호에 의거 2012년내 매각하여야 하는 동부메탈 지분 및 울산 유화공장 부지의 매매계약 체결 기한을 2013년 말까지로 연장

○ 현재 진행현황 : 유화공장 매각계약체결, 동부메탈 주식매각 진행 중. 끝.